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또는 아동사망조사위원회 설치 등 》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709호)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118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경 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6
1. 총괄적 검토	6
2. 주요 조문별 검토	17
가. 제명 및 목적, 정의, 실태조사	17
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	23
다. 위원회 및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27
라.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보고서) 작성	38
마. 국립아동사망검토·예방센터 또는 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 설치·운영	40
바.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또는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 설치·운영 ..	42
사. 기타	49

I. 개요

1.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70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19.
- (3) 회 부 일 : 2024. 12. 20.

나. 제안이유

아동의 생명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보장된 권리이며,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악성신 생물(암), 사고, 가해·자해 행위 등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3분의 2에 달하고, 이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임. 또한, 매년 발표되는 우리나라 아동사망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사망원인을 분석·검토하여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 하에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아동사망검토(CDR: Child Death Review)’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

이에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분석·검토하고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정책·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아동사망검토위원회 등 아동사망 검토·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동사망 검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검토 및 아동사망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국내 발생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검토,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위해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아동사망 현황 통계와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포함된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는 아동사망 발생 및 대응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하고,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시스템 및 통계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는 아동사망의 검토·예방에 관한 연구 및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아동사망검토·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18조).

사) 지역의 개별 아동사망 사건 원인 등 검토, 아동사망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등을 위해 시·도에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검토위원회는 개별 아동사망사건 검토 결과와 아동사망의 원인 분석 등이 포함된 지역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에 제출하며, 그 밖에 지역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개별 아동사망 사건 검토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2.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11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진숙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12. 31.

(3) 회 부 일 : 2025. 1. 2.

나. 제안이유

국가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의 가정이나 학교 등의 생활공간에서의 안전 확보, 범죄, 식품·제품 등과 관련된 사회위험요인 대응,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정신건강 관리, 안전 관리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분절적이고 파편화되어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아동의 생명권 보장과 아동사망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상시적 정책이 필요함.

이에 아동사망의 원인 등 아동사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분석·검토 등을 통하여 아동사망을 예방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함(안 제4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사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사망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7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의 조사와 예방에 관한 정책 및 지역 아동사망조사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운영함(안 제10조).

마) 시·도지사는 아동사망 현황 파악 및 사망원인 조사 등 아동사망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검토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운영함(안 제11조).

Ⅱ.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 2건의 제정안은 아동의 모든 사망에 대한 발생원인 등의 조사 또는 검토를 통해 기존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확인·보완하여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¹⁾.

주요 내용을 보면, 강선우의원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아동사망의 검토·예방에 관한 연구 및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국립아동사망검토·예방센터 및 지역의 개별 아동사망사건의 원인 검토 등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필수적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진숙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아동사망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아동사망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아동사망 조사·검토 방법 및 절차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 및 관할지역 아동사망 현황 파악, 아동사망 원인 조사·분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의 임의적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1) 2건의 제정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강선우의원안은 연 평균 13억 4,400만원, 전진숙의원안은 연 평균 12억 8,100만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음.

<제정안 간 구성 체계 비교 >

강선우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실태조사)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실태조사)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2장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등	제8조(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업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3조(위원의 겸직금지) 제14조(사무국의 설치) 제15조(직원의 신분보장) 제16조(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제17조(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8조(국립아동사망검토·예방센터)	제7조(아동사망조사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 제10조(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
제3장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등	제19조(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20조(지역검토위원회의 구성) 제21조(지역검토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2조(개별 아동사망사건검토 방법·절차) 제23조(아동사망 서류·정보·기록 제출 의무)	제11조(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

제4장 보칙	제24조(자료제출 요청 등) 제25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6조(위원회 위원 등의 면책) 제27조(보고서의 공개)	제12조(협조요청) 제13조(보고서 작성)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5조(위임과 위탁)
제5장 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과태료)	제16조(벌칙)
부칙	시행일: 공포 후 2년, 다만 설치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음.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헌법상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 기능하는 절대적 기본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²⁾,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³⁾은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아동의 생명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는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2)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을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임을 판시한 바 있음.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판결문 일부 인용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3)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90.9.9 발효되었으며, 2020. 3월 기준 196개국이 가입한 아동관련 국제인권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0.9.25 협약에 가입하여 1991.11.20 국회에서 이를 비준하였음.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의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아동사망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아동사망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3년 간 0세에서 19세까지 사망자수는 2020년 1,767명에서 2023년 인구 10만명당 1,670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290.2명에서 295.1명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 기준 사고로 인한 어린이(0~14세)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9명으로, OECD 평균(인구 10만명당 3.7명)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4)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령별 아동 사망자수 (2020~2023년) >

(단위: 명)

연도	0세	1-9세	10-19세	합계
2020년	674	327	766	1,767
2021년	626	287	773	1,686
2022년	565	384	796	1,745
2023년	564	303	803	1,670

* 자료 : 통계청

* 아동의 범위를 9세까지로 조사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출생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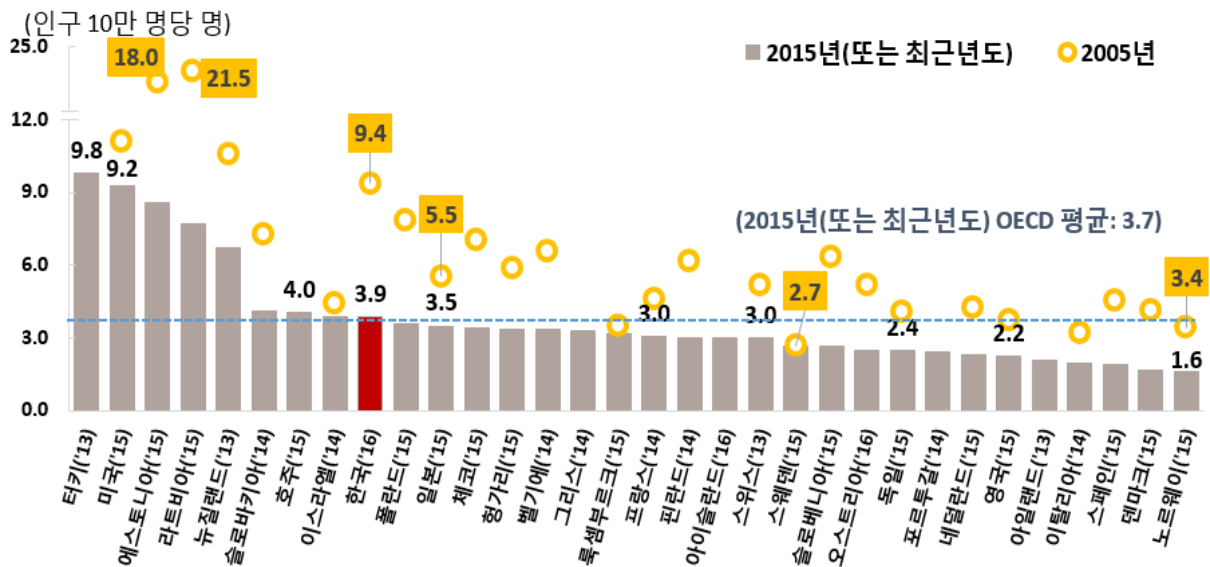
< 인구 10만명당 아동 사망자수 (2020~2023년) >

(단위: 인구 10만명 당 명)

연도	0세	1-9세	10-19세	합계
2020년	240.6	18.7	30.9	290.2
2021년	241.2	17.2	32.5	290.9
2022년	226.8	24.7	33.9	285.4
2023년	239.9	20.7	34.5	295.1

* 자료 : 통계청

< 어린이 사고 사망률(2015) >



* 자료 : 통계청(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통계, 2018)

- 주목할 만한 점은 1~9세 아동의 경우 유기·학대 등 타살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다는 점이고, 10~19세의 아동의 경우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월등히 높았다는 점⁵⁾임.

< 연령별 사망원인(2023 사망원인 통계) >

(단위: 인구 10만명당 명, %)

순위	0세	1~9세	10~19세
1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113.1(47.2%)	악성신생물 1.4(15.2%)	고의적 자해(자살) 7.9(46.1%)
2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36.2(15.1%)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0.9(9.2%)	악성신생물 2.2(13.1%)
3	영아돌연사증후군 19.1(8.0%)	가해(타살) 0.7(6.9%)	운수사고 1.3(7.7%)
4	가해(타살) 4.3(1.8%)	익사 사고 0.6(5.9%)	심장 질환 0.4(2.4%)
5	심장 질환 3.4(1.4%)	운수 사고 0.4(4.6%)	가해(타살) 0.4(2.1%)

자료: 통계청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나 자살·타살 등으로 인한 사망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아동의 사망을 상당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음.

- 아동사망의 원인은 연령별·특성별로 상이하고,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므로 국가가 그 원인을 심도 있게 규명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아동에 초점을 두고 사망원인을 집계하고, 그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임⁶⁾.

5) 「2023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0대 자살율은 인구 10만명당 6.5명으로서, OECD 평균 3.6명에 비해 높게 나타남(p.135, 2023, 보건복지부).

6) 통계청은 매년 사망원인 통계 발표로 국민의 사망규모, 사망원인 및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여 인구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영아사망 통계조사 등도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을 전반으로 하는 조사는 부재하고, 예방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 이를 사례별·유형별 심도 있는 조사체제로 보기엔 한계가 있음.

□ 이에 2건의 제정안은 아동의 모든 사망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특히 강선우의원안은 아동사망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 규명을 통하여 ‘예기치 않은 사망’과 ‘예방 가능한 사망’을 구분하여, 범부처·기관을 아우르는 국가의 책임 하에 전문적 아동사망검토·조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사망의 발생 원인과 유형은 복잡적이고 다양⁷⁾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은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개선대책은 향후 유사한 피해예방과 아동사망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음.

□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아동법」에서 ‘아동사망조사파트너(Child Death Review Partner: CDRP)’를 두어 아동사망 관련 사항을 조사·분석하게 하며, 미국의 경우 각 주에서 주(州)법으로 아동사망의 발생 및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팀/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방정부는 이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아동학대 사망분석 추진 이후, 아동사망검토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점은 법안 심사 시 고려될 필요가 있겠음.

7)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경우 그 발생 원인으로 가정폭력, 경제문제(무직, 빈곤, 감당 못할 부채), 범죄경력, 불안정한 혼인 형태, 정신병력(우울증, 자해 및 자살 시도, 알코올 문제), 불우한 어린 시절(피학대경험, 가정폭력, 빈곤 등), 지지체계 부족 등이 지적됨(강현아 외 5,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유형 및 특성」, 『한국아동복지학』 제68호, 2019).

< 해외 사례 >

1 영국

- 「아동법」에서 “아동사망조사파트너”(Child Death Review Partner: CDRP)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 “아동사망조사파트너”는 아동사망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역할 수행
- 아동 사망 고지 등이 있는 경우, ①아동사망개관패널(CDOP)에서 관련 조사 및 정보수집 후 관련 전문가들의 ②아동사망조사회의(CDRM)를 개최, 이후 ③아동사망조사파트너(CDRP, '17~)의 독립적인 검토를 거쳐 ④전국 아동사망 데이터베이스(NCMD, '19~)에 입력하는 방식
 - 아동사망이 발생한 경우 ① ‘아동사망개관패널’ 등에 통지(notification)
 - ‘아동사망개관패널’은, 사망 원인 등에 따라 아동의 생전 또는 사망 후의 정보를 가장 적합한 기관이 보고양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요청
 - 보고양식 완성 후 ② 지역의 아동사망조사회의가 소집되는데 해당 아동의 생전 또는 사후 사항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분석서 초안 작성
 - ③ 아동사망조사파트너의 검토를 거친 최종 분석서는 ④‘전국 아동사망데이터베이스’에 입력
- 아동사망조사파트너의 업무: 해당 지역 내 아동 복지 및 공중보건·안전과 관련하여 아동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적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관련한 조치의 적절성을 판단
- 아동사망조사파트너의 권한: 정보요청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아동사망검토프트너는 ‘정보요청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강제집행(injunction)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2 미국

- 아동사망조사에 대해서는 각 주에서 주법으로 아동사망의 발생 및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팀/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방정부는 이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
- (예시)메릴랜드 주법 (제5-701조~제5-709조)
 - ‘주(州)아동사망검토팀’(State Child Fatality Review Team)을 두고 있는데 최소 25명. 해당 팀은 주(州)법무장관, 의료심사책임자, 인력부장관, 보건부장관, 주(州)교육감, 주(州)경찰책임자 또는 그 지정자로 구성
 - 주(州)아동사망검토팀의 목적: 아동사망의 원인 및 발생에 대한 분석, 아동사망 방지를 위한 아동사망검토팀의 대응, 아동사망 방지를 위한 법률, 정책, 실무에 있어서의 개선권고
 - 주(州)아동사망검토팀의 주 업무:
 - 주(州)내의 아동 사망의 원인 및 발생에 대한 연간 통계 작성

- 지역 아동사망검토팀(local team)으로부터의 보고서 검토
- 지역팀과 협력하여 ‘아동사망자조사’에 대한 기준(protocol) 개발
- (비공개 원칙) 아동사망조사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받은 정보에서 특정 아동의 신원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음. 위반 시 500달러 이하의 민사벌칙금(civil penalty) 부과
- 주 내 각 카운티에 기관복합(multiagency)형태의 ‘(지역)아동사망검토팀’(local child fatality review team)을 두도록 규정. ‘(지역)아동사망검토팀’ 역시 의료, 교육, 경찰, 학대대응프로그램의 책임자, 교육부 관계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 ‘(지역)아동사망검토팀’은 사망 아동에 대한 보육 정보, 의료서비스제공자가 관리하던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
- 주(州)아동사망검토팀 및 ‘(지역)아동사망검토팀’의 회의는 아동사망에 대한 개별 사례를 검토하는 경우 비공개로 함.

3

일본

- (조직구성) 후생노동성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아동부회 산하 학대검증위원회
 - * 아동가정청 출범에 따라 후생노동성 업무 이관('23.4)
 - 각 도도부현 등(70곳, 정령시·아동상담소설치시 포함)에도 별도 위원회* 조직 설치(69개소, '21년 기준)
 -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하부조직(31개소), 사회복지심의위원회 하부조직(30개소), 단독위원회(7개소), 기타(1개소)
- (인력구성) 약 .3명('21년 기준) ※행정인력 등 제외
 - * 대학교수 및 연구원,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아동위원, 민간위원 등
- (분석대상) 아동학대 사망, 중상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통보 무관)
 - 각 도도부현마다 자체적으로 사건 선정 후 사망분석 추진하고, 후생노동성에서 매년 주제선정 및 취합하여 보고서 발간('05년~, 총 19차 진행)
 - * ▲신생아사망('14년), ▲시설 입소 경험이 있는 아동사망('16년), ▲일반사례 판단 후 사망('17년), ▲10대 임신사망('18년), ▲방임사망('21년), ▲자녀살해 후 극단적 선택('23년)
- (분석시기) 매년 1회(후생노동성 종합분석 보고서 발간)
 - 각 도도부현마다 전향적 또는 후향적 분석 다양하게 추진
 - * 사망 직후 파악된 정보에 한해 분석 및 공표(히로시마시) vs 재판 이후 분석 및 공표(사가현)
 - ** 필요 시, 후생노동성에서도 자체적으로 사건분석 추진
- (분석기간) 3개월~22개월/ 평균 13개월('21년 기준)
- (보고서 공개 여부) 보고서 공개(회의록 등 비공개)

* 자료 : 보건복지부

- 첫째, 금번 2건의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을 대상으로 조사·분석 체계를 수립하려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549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법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금번 2건의 제정안은 각각 아동 사망 사건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김선민의원안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하겠음.
- 아울러, 아동 사망사건 조사·분석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하여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관 성격으로서 대통령 소속의 국가아동 사망검토위원회가, 전진숙의원안에서는 심의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아동사망조사위원회가 각각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김선민의원안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관 성격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보다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 설계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2건의 제정안에서는 각각 합의제 행정기관 성격의 위원회 또는 심의기구로서의 위원회 설치, 조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보다 원활한 입법을 위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도 필요해 보임.
- 셋째, 우리 위원회는 금번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서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유족 등에 대한 면담, 형사

사법정보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2024. 12. 5.)하였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2건의 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사망검토제도를 도입하여 아동의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나, 모든 아동 사망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행정적·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고, 현재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DD20193)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제명 및 목적, 정의, 실태조사(강선우의원안 및 전진숙의원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2건의 제정안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강선우의원안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전진숙의원안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사망의 검토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사망”이란 사망 원인과 관계없이 아동의 모든 사망을 말한다. 3. “예기치 않은 사망”이란 이 법에 따른 검토 전에 발생한 아동 사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거 병력 또는 징후나 증상 없이 발생한 사망 나. 외상이 의심스럽거나 모호한 경우에 있어서의 사망 다. 영아돌연사증후군에 따른 사망 라. 기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 4. “예방 가능한 사망”이란 합리적인 의학적·사회적·법적·심리적 또는 교육적 개입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을 말한다. 5. “검토”란 아동사망(개별 아동사망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련 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사망의 조사·검토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사망”이란 사망원인과 관계없이 아동의 모든 사망을 말한다.

관, 전문가 또는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정보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사망 관련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 자료 또는 기록을 말한다. 가.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나.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다. 「의료법」 제23조에 따른 전자 의무기록 라.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검증 영장 마.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 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에 따른 수사기록 사.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 조서 아. 「소년법」 제30조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조사 및 심리 기록과 관련 증거물 자.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 결정된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 및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 보고서 차.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복지 관련 정보 카. 제17조에 따라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정보 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 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에 따른 정보, 자료 또는 기록과 유	
--	--

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자료 또는 기록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생명권 보장과 아동사망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아동사망의 검토 및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사망 예방 및 사망아동의 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검토 및 아동사망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및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생명권 보장과 아동사망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아동사망의 조사 및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사망 예방 및 사망한 아동의 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 먼저, 제명과 관련된 것으로, 강선우의원안에서는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전진숙의원안에서는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으로 규정하고 있음. ‘조사’의 경우 위원회의 ‘조사’와 형사상 ‘수사’의 관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중복조사 및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견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관련하여,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으로 사실상 수사와 유사한 형태로 구현될 수도 있고, ‘검토’는 ‘아동사망에 대하여 관련 기관, 전문가 또는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정보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사법적·행정적·의료적 개입을 모두 포함하게 될 수도 있는바, 중복검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관련 정보’를 한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겠음.

□ 참고로,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수사와의 관계 불분명, 중복조사 및 2차 피해의 우려 및 수사의 밀행성 저해 우려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다음, 법 적용 대상인 아동사망의 정의(각각의 안 제2조제2호)와 관련하여 2건의 제정안 모두 사망 원인과 관계없이 아동의 모든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 김선민의원안에서는 법 적용대상을 아동학대사망사건에 한정하고 있는바, 법 적용 대상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하겠음.

□ 다음, 2건의 제정안(각각의 안 제4조)에서는 각각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면서도,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실태조사는 아동사망의 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점검하

여 정책 등에 대한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임. 기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종합실태조사⁸⁾를 통해 실시하던 조사와 유사·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이와 병행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아동사망사례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등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그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음.

<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개요 >

- (목적)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토대로,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아동정책 수립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조사영역) 건강, 발달 및 교육, 관계, 양육 및 돌봄, 여가 및 활동, 안전 및 위험행동, 지역사회 환경, 물질적 환경, 주관적 웰빙 등 9개 영역 조사
- (조사방법) 3년 단위로 실시하며, 전국 만18세 미만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가구방문 조사
- (기간)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23년 실태조사 기준)
 - * 통계설계, 조사, 통계처리 및 분석 등

8) 「아동복지법」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울러, 실태조사의 주기와 관련하여 강선우의원안은 3년, 전진숙의원안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건 모두 실태조사를 3년 주기의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3년 주기로 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해 보임.
- 그 외에, 강선우의원안은 과거 병력 또는 징후나 증상 없이 발생한 사망, 외상이 의심스럽거나 모호한 경우에 있어서의 사망, 영아돌연사증후군에 의한 사망, 기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을 ‘예기치 않은 사망’으로, 합리적인 의학적·사회적·법적·교육적 개입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을 ‘예방 가능한 사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는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가 작성하는 지역아동사망검토보고서에 아동사망이 예기치 않은 사망이었는지 여부, 예방가능한 사망인 경우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데 있으므로(강선우의원안 제19조제3항), 이를 정의규정에서 규정하기보다는 개별 아동사망사건에 대한 전수 검토를 하여야 하는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실효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아울러, 강선우의원안에서 ‘아동사망 관련 정보’로 압수·수색·검증 영장,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등 수사 관련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안 제2조제6호)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한 정보의 연계 방안 및 중복조사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강선우의원안 제5조부터 제7조 및 전진숙의원안 제5조·제6조)

- 2건의 제정안에서는 공통적으로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각각의 안 제5조)하도록 하면서,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강선우의원안) 또는 아동사망조사위원회(전진숙의원안)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특히, 강선우의원안에서는 기본계획에 취약계층아동 및 장애아동의 사망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강선우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5. 아동사망의 검토 및 예방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아동 및 장애아동의 사망에 대한 별도의 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아동사망의 조사 및 예방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아동사망의 조사 및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제8조에 따른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아동사망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이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아동사망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아동사망사건에 대한 분석 등은 대상 범위가 넓고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은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특히,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제7조⁹⁾) 중 건강과 안전영역에서 영아사망, 보육·교육시설 안전, 학교폭력, 자살, 교통안전, 아동학대 등의 과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아동정책 기본·시행계획은 그 대상범위가 넓어 아동사망사건에 한정하여 조사·분석의 방법과 절차, 사례조사연구, 시스템 운영관리, 보고서 작성, 예방대책 마련 등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등을 바탕으로 일률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9) 「아동복지법」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다만, 기본계획의 변경 시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인지,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등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강선우의원안(제7조)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다음 조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법 체계상 바람직하겠음.

다. 위원회 및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강선우의원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전진숙의원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강선우의원안은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심의를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 성격의 행정위원회로서 대통령 소속의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구성 및 업무, 위원의 신분보장 및 겸직금지,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진숙의원안은 심의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아동사망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아울러 2건의 제정안 모두 아동사망 발생 및 대응의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강선우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제8조(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설치)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의 모든 사망 사건을 검토하여 아동사망의 원인과 발생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아동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며, 그 대책이 법령·제도·정책에 반영 및 이행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아동사망조사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사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사망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아동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은 아동사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대학에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의학 전공자 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관련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수사·정보수집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아동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아동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대통령은 그 위원의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⑥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업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을 위한 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격년으로 작성하여 대통령, 국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이하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원인별 및 기타 분류에 따른 아동사망 현황 통계 2.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아동사망검토보고서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분석 3. 예방 가능한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대책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사항 4. 예방 가능한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제4항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평가 결과 ④ 위원회는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아동사망의 조사 및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사망의 조사 및 예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

서에 따라 아동사망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대통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권고하고, 그 권고사항이 법령·제도·정책에 반영 및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및 이행여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대통령, 국회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국가아동사망검토 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공개, 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반영 및 이행 여부 점검·평가, 제5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이행여부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는 아동사망 사건 중 국가 또는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중대사건으로 선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사건 검토팀을 구성하여 중대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검토를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예방 가능한 아동 사망 건수를 줄이기 위하여 홍보 등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제13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재직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위원회는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	
---	--

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위원과 보조인력 등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직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사무국의 조직·운영 및 사무국 직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국가는 아동사망 발생 및 대응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제9조(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발생 및 대응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별 아동사망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정보를 입력·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이하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③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는 아동사망 발생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통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
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④ 위원회는 아동사망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먼저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강선우의원안) 또는 아동사망조사위원회(전진숙의원안) 설치와 관련된 사항임.

□ 첫째, 강선우의원안은 아동 사망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적·범부처적 차원의 공적 분석 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반면, 전진숙의원안은 아동 관련 정책을 통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고 심의기구로서 아동사망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보다 효과적인 조사·분석 거버넌스 체계 설계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참고로, 김선민의원안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함.

□ 둘째,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강선우의원안에서는 위원장(정무직으로서 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 1명, 상임위원(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진숙의원에서는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이처럼 강선우의원안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을 7명 이상으로 하여 그 상한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적정 상한선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보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바람직해 보임. 아울러, 연임 가능 여부도 함께 규정하여야 하겠음.

□ 셋째, 위원회의 업무(기능)과 관련하여 2건의 제정안 모두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강선우의원안에서는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도 통합 규정되어야 하겠음.

□ 그 외, 강선우의원안에서는 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존속기한,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결격사유¹⁰⁾,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가 제한¹¹⁾되고, 위

10) 강선우의원안은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위원인 ‘지역검토위원’의 경우 임기의 연임(안 제20조제5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고 있음(안 제21조).

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¹²⁾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선우의원안의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전진숙의원안의 ‘아동사망조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기보다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현행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입장임.

- 다음,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것임.
- 강선우의원안은 국가가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원회’가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시스템 구축·운영 주체인 ‘국가’는 ‘위원회’로 해석됨. 반면, 전진숙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로 되어 있음.
- 보다 효과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주체를 누구로 규정할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아울러 강선우의원안에서는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형사사법정보를

1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¹³⁾하고 있는데, 아동사망 변사사건 처리과정에서 생성되는 형사사법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연계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 1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정의)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4.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 활용되고 신속히 유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가 정한 형사사법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라.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보고서) 작성(강선우의원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및 전진숙의원안 제13조)

- 강선우의원안에서는 위원회는 격년으로 지역별·원인별 아동사망 현황, 아동사망 조사결과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전진숙의원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역별·원인별 아동사망 현황, 아동사망 조사결과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강선우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제10조(위원회의 업무 등) ② 위원회는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격년으로 작성하여 대통령, 국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이하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원인별 및 기타 분류에 따른 아동사망 현황 통계 2.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아동사망검토보고서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분석 3. 예방 가능한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대책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사항 4. 예방 가능한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제4항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제13조(보고서 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아동사망의 현황 및 예방 관련 정책의 추진 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원인별 아동사망 현황 통계 2. 아동사망 조사결과 분석·검토 내용 3.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대책 및 권고사항 4.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결과 ③ 보고서 작성 방법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보고서)는 아동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는 중요 자료인 만큼 주기적으로 발간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바, 가급적 매년 발간이 가능한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참고로, 작성 주체와 관련하여 강선우의원안은 위원회로, 전진숙의원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강선우의원안의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짐에 따른 것으로 이해됨.

마. 국립아동사망검토·예방센터(강선우의원안 제18조), 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 설치·운영(전진숙의원안 제10조)

□ 2건의 제정안은 아동사망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또는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음(강선우의원안 ‘국립아동사망검토·예방센터’, 전진숙의원안 ‘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 그 외, 전진숙의원안은 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강선우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제 18조(국립 아동사망검 토 · 예 방센 터) ① 위원회는 아동사망의 검토 · 예 방에 관한 연구 및 제19조에 따른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아동사망검토 · 예방센터(이하 “아동사망검토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② 아동사망검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사망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업무 및 아동사망 관련 정보의 수집 · 분석 2. 예방 중심의 아동사망검토 프로세스 개발 · 구현 및 유지 3. 아동사망검토 방법 · 절차의 연구 · 개발 4. 제19조에 따른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5. 제19조에 따른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에 대한 운영지원 및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간의 네트워크 지원 6. 그 밖에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과 관련	제10조(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의 조사와 예방에 관한 정책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이하 “중앙조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1조에 따른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 지원 2. 아동사망 관련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3. 아동사망 조사 · 검토 방법 및 절차 연구 · 개발 4. 제11조에 따른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5.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6. 아동사망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연구 7. 정보시스템 운영 · 관리 8. 그 밖에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

하여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아동사망검토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조사기관의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중앙조사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강선우의원안 및 전진숙의원안은 개별 지역아동 아동 사망 현황 파악 및 원인 분석을 ‘지역’ 단위의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 차원에서 지역의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며,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두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특히 전진숙의원안은 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소속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공적 책임 하에 아동사망사례 조사·분석업무를 주도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행정안전부는 강선우의원안의 ‘국립아동사망검토·예방센터’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나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 또는 ‘부속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직제)로 정하여야 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 등이 아닌 경우 ‘법인’으로 명시 또는 연관 기능 수행 기관 또는 단체를 ‘국립아동사망검토·예방센터’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임.

바.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또는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 설치·운영(강선우 의원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전진숙의원안 제11조)

□ 지역의 개별 아동사망사건에 대하여 파악하고 사망원인 등을 분석할 지역 단위의 기관으로서 강선우의원안에서는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전진숙의원안에서는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강선우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제19조(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이하 “지역검토위원회”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개별 아동사망사건의 사망 원인 등 검토 2. 지역 아동사망 관련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통계자료 작성 3. 지역아동사망검토보고서의 작성 4. 사망한 아동의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체계와의 연계 ② 지역검토위원회의 검토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 아동사망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1. 질병이환 또는 외인(外因)으로 인한 사망	제11조(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이하 “지역조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하는 시·도의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조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관할지역 아동사망 현황 파악 2. 아동사망 원인 조사·분류 3. 아동사망 조사결과 분석·검토 4. 사망한 아동의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 5. 정보시스템 입력·운영 ② 지역조사기관에는 아동사망에 관하여 조사하는 전문조사요원과 사망한 아동의 가족을 상담하는 상담원을 둔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조사기관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역조사기관의 설치·운영, 제2항에 따른 전문조사요원과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

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임상적 특징이 발견된 사망으로서 의사의 이상 소견이 있는 사망 ③ 제1항제3호의 지역아동사망검토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 아동사망사건 검토 결과 2. 아동사망이 예기치 않은 사망이었는지 여부 3. 아동사망을 야기한 위험요인 4. 아동사망이 예방 가능한 사망인 경우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안 5.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등 권고사항 6. 유가족 상담 및 복지지원 연계 등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 ④ 지역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검토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역검토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검토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검토위원회에는 아동사망에 관하여 검토하는 지역검토위원(이하 “지역검토위원”이라 한다) 및 1인의 지역검토위원장을 각각 둔다. ② 지역검토위원은 지역 아동보호담당자, 검사·변호사·검시조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수사경과를 이수한 자에 한한다)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소아청소년과 의사, 응급의학과 의사, 교육 전문가, 아동보호서비스 전문가, 아동학대예방 전문가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등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 지사의 위촉을 거쳐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검토위원장은 지역검토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지역검토위원회는 검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상담전문가 및 보조인력 등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지역검토위원회와 그 사무국의 설치·운영 및 사무국 종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역검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는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지역검토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역검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아동사망사건 검토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지역검토위원이 개별 아동사망사건의 검토대상자(아동사망사건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지역검토위원이 개별 아동사망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지역검토위원이 개별 아동사망사건에 관한 진료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지역검토위원이 개별 아동사망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

는 경우

② 검토대상자는 지역검토위원의 검토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역검토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지역검토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검토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지역검토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지역검토위원은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지역검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개별 아동사망사건 검토 방법·

절차)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에서 개별 아동사망사건이 발생하였 때에는 암호화된 아동의 사망증명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지역검토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역검토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망증명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역검토위원회에 알리고, 알린 날부터 4주 이내에 검토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지역검토위원장은 개별 아동사망사건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검토에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망한 아동에 대한 아동사망 관련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한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

내에 요청받은 정보를 지역검토위원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역검토위원회는 사망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사망 전후 에 각종 사회보장서비스가 제공되었 거나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 여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역검토위원회는 아동사망검토 센터가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 발한 검토 방법·절차에 따라 개별 아동사망사건을 검토하고 그 검토 데이터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아동사망정보시스템에 입 력하여야 한다. ⑥ 지역검토위원회는 제19조제1항제 3호의 지역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제 1항에 따라 사망증명서 또는 시체검 안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아동사망 서류·정보·기록 제 출 의무) 아동사망을 확인한 사법경 찰관리,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 도지사에게 아동사망 사실을 통보하 고, 사망증명서, 시체검안서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 정보 또 는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2건의 제정안은 국가보다 개별 아동사망사건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
지자체 차원의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에서 그 원인을 분류하고,
면밀한 조사 및 가족에 대한 상담 등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려는 취
지로 이해됨.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또는 조사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특히 강선우의원안의 경우 지역검토위원회 차원에서 ‘아동사망이 예기치 않은 사망이었는지 혹은 예방가능한 사망이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는 만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력이 각 지자체에 균형 있게 배치되어 통일적·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간 충분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재정상황 및 기초지자체별 아동 수, 아동사망 발생 건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강선우의원안의 경우 지역검토위원을 ‘지역 아동보호 담당자, 검사·변호사·검시조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소아청소년과 의사, 응급의학과 의사, 교육 전문가, 아동보호 서비스 전문가, 아동학대예방 전문가 등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진숙의원안의 경우 지역조사기관의 전문조사요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그 구체적 구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음.

□ 그 외, 강선우의원안에서는 지역검토위원장이 사망증명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받은 후 지역검토위원회에 알리고, 알린 날부터 ‘4주’ 이내에 검토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조사 절차를 규정(안 제22조)하고 있는데, 사망 직후 수사와의 관계, 사망원인 조사의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행정안전부는 강선우의원안에서 지역사망검토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바. 기타(강선우의원안 보칙, 벌칙 및 전진숙의원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강선우의원안은 제4장 보칙에서 자료제출 요청 등,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 등의 면책, 보고서의 공개를, 제5장 벌칙에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 전진숙의원안은 장 구분 없이 협조요청, 보고서 작성, 비밀누설의 금지, 위임과 위탁, 벌칙을 규정함.

강선우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제24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역검토위원회의 지역검토위원장은 아동사망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사망 관계 전문가, 기관·법인·단체의 장 및 관계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그 제출한 자료나 진술한 의견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아동사망 검토 또는 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위원회 위원 등의 면책) 위원회의 위원과 지역검토위원회의 지역검토위원은 위원회나 지역검토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견에 관하	제12조(협조요청)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아동사망 관련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및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서 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아동사망의 현황 및 예방 관련 정책의 추진 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원인별 아동사망 현황 통계 2. 아동사망 조사결과 분석·검토 내용 3.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대책 및 권고사항 4.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결과 ③ 보고서 작성 방법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보고서의 공개) 위원회는 국가 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망한 개별 아동 및 그 가족, 후견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보 2. 아동학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용의자에 대한 정보 3. 사망한 개별 아동이나 그 가족을 위한 지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아동사망 사실에 대한 통보나 관련 서류·정보 또는 기록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의 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아동사망 조사·검토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아동사망 조사·검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제1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전진숙의원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권한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이 있는 반면 강선우의원에서는 위임·위탁 규정이 부재한바¹⁴⁾,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장 또는 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할 수 있겠음. 참고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¹⁵⁾,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¹⁶⁾에서도 업무의 위임·위탁 규정을 두고 있음.
- 그 외, 전진숙의원안에는 ‘비밀 누설’과 관련한 벌칙만 있을 뿐 관계인 등이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안 제12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바, 이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500

14) 김선민의원안(의안번호 제6534호)에도 위임·위탁 규정은 부재함.

15)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0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